

화재손해의 범위(상)

이 순 관
(보험 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9년 2월 19일, 신청인 J와 피신청인 L사이에 피보험자는 신청인 J로 하고,

보험목적 : 관지가공기계 및 관지절단기 등

보험금액 : 22억원

담보위험 : 화재, 낙뢰, 폭발 등
보험 기간 : 1989년 2월 19일 ~ 1990년 2월 19일(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보험계약 (Inland Floater Policy)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90년 1월 28일 신청인 공장의 생산1과 기계반에 설치된 위 보험목적의 하나인 기계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건 기계제작회사 기술자의 점검소견에 따르면 원인불명의 외부적 원인에 의해 1차발화하여 Control Panel 하부로 부터 불꽃이 스며들어 지분이나 먼지에 인화되면서 동 기계를 태운 것으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조사결과

외부로 부터의 화재사고원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본건의 사고원인은 전기적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전기적 사고를 담보하지 아니하는 본건 보험에서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본건 분쟁사안을 심의한 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본건 사고기계의 설치장소는 관지절단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동 Control Box내에 먼지 등 지분이 쌓여 있는 것이 예전된다 할 것인데 신청인주장과 같이 외부의 제3의 불이 이곳에 인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기계는 전원공급상 이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 무정전 전압조정기와 다수의 전압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즉시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자동차단기에 달리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사고기계의 전류유입부위인 스위치 접촉부위에서 접촉불량이 초래됨에 따라 동 부위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동 기계내에 쌓여 있는 지

분이나 먼지 등에 인화하여 연소가 계속된 화재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전기적 사고임을 이유로 면책처리하겠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평설

가. 머리말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에 의하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보험자는 원인의 직·간접여하를 불문하고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면책조항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원인(고의, 전쟁위험, 지진이나 분화 등 자연적 재해 등에 의한 화재손해)에 의한 화재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관없으며, 실제로도 화재보험계약면책조항에는 일정한 원인 등에 의한 화재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보험국문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이나 약관에는 화재의 정의가 없으므로 화재보험에 있어서 화재의 정의에 관하여는 「일반사회 통념에 따라 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

진 화력의 연소(燃燒)작용」라고 하는 견해 또는 「화재라 함을 보통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즉 고유한 연소력(延燒力)을 가지는 연소(燃燒)작용으로 인한 재해」라는 견해 등 여러 가지의 해석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위 설명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보험자 책임을 논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개념파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제국에 있어서의 화재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여 봄으로써 화재보험에 있어서 화재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 영국의 화재정의

영국에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화재를 Fortuitous Fire(우연히 발생하는 불)와 Domestic Fire(사용목적을 위하여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용되는 불)로 구분하여 화재보험증권에서 말하는 화재는 Fortuitous Fire를 가리키고, Domestic Fire는 화재보험증권에서 말하는 화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

동 원칙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례는 Austin V. Drew(1815) 사건이라 하겠다. 즉 보험의 목적물인 설장치를 매일밤 닫아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점화할 때에 열어두는 식으로 해왔는데 어느 날 아침 점화를 하자 연기가 공장건물에 충만하고 이상한 열이 생기어 설탕이 변색한 사고가 있

었다.

제1심에서는 종업원이 공기조절장치를 열어두는 것을 잊어버려 발생한 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점, 통상 이상의 강한 불이나 불이 늘 존재하여 왔던 스토브나 연도(煙道)를 제외하고는 존재해서는 아니될 불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만 만약 불이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외부로 나와 설탕이 됐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 종업원의 과실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종업원의 과실이 손해의 원인(종업원이 공기조절장치를 열어두었다면 연기나 열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라는 이유로 역시 피보험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본건 사안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Domestic Fire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에서의 불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Harris V. Poland(1941) 사건의 출현에 의해 불의 해석은 일변하여 소위 보험증권에서 말하는 불은 특정의 불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인 보석의 도난을 염려하여 벽난로의 석탄밑에 보석을 숨겨두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화하였기 때문에 보석이 망가진 사안에 대하여, 보험자는 Austin V. Drew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Austin

V. Drew 사건에서는 불이 일정의 장소를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연료 이외에는 타서는 안될 것이 아무 것도 탄 사실이 없었던 사실이 결정적 요소로 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지만,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토브의 가운데로 보험의 목적물이 낙하하여 동 목적물이 손상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피보험자로서는 상상밖의 일인 것처럼, 불이 밖으로 나와 보험목적물을 태우는 것이나 보험목적물이 불속으로 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요컨대 이는 불의 본래의 용법이나 불이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났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타서는 안될 것으로 예정된 목적물이 우연히 탓는지의 여부를 화재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서 동 사건이 후 영국에서는 Fortuitous Fire와 Domestic Fire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불이 있어서는 안되는 장소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불의 발생과 존재활동이 이상할 것을 필요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필수요건인 우연성을 결여한다고 보는 미국에 있어서의 화재개념과 뚜렷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호에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화재정의를 소개하고 결론을 내립니다〉